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 
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월 8일

여수시장 조기원



여수시 조례 제2258호

붙임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
2.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. 다만,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정 신청)”을 “(지정 및 변경 신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받고자”를 “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실시하고,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권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 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골목형 상점가 개요	명칭	대표자 성명		
	소재지	전화번호		
	규모	토지 면적:     m <sup>2</sup> , 건물 연면적:     m <sup>2</sup> , 영업장 면적:     m <sup>2</sup> , 점포 수:     개		
	구역 상세	주소	면적(m <sup>2</sup> )	점포 수

상인 조직	명칭	대표자 성명
	주소	전화번호
	설립일	회원 수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「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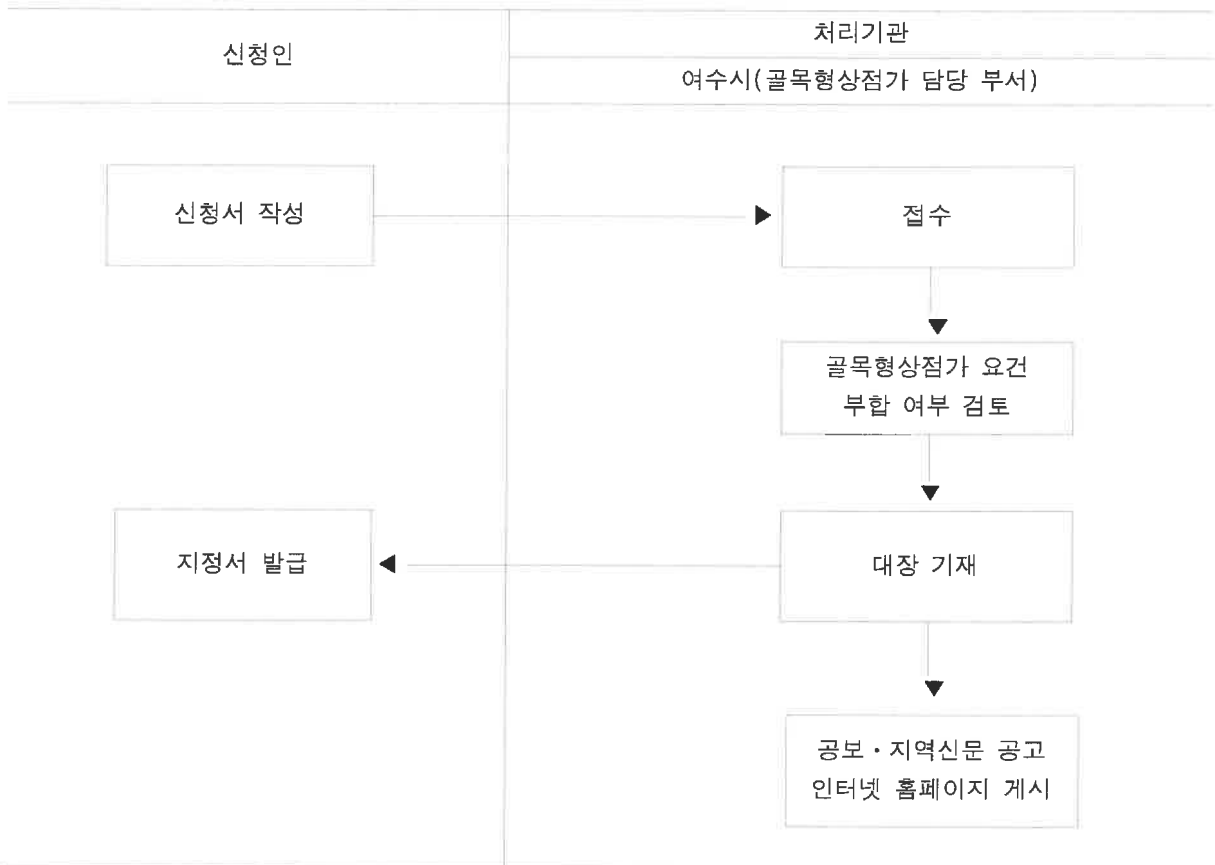
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(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)</li> <li>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</li> <li>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</li> <li>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</li> <li>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지정기준) &lt;신설&gt;</p> <p><u>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지정 신청) 골목형상점가로 <u>지정받고자</u>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</p>	<p>제3조(지정기준) ① <u>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</u></p> <p>2. <u>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. 다만,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지정 및 변경 신청) --- <u>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</u> ----- ----- -----</p>

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 
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6조(지정 취소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 
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 
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 
실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  
장)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 
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  
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  
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  
할 수 있다.

-----  
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정 취소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실시하고,  
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 
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  
서 등으로 통보해야 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  
장) -----  
-----  
-----

----- 권장하여야 한다.